

## 「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」 이용 안내

□ 우리원의 「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」를 통해 ‘행위부터 약제까지’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(타병원 이력 포함)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○ 일부 요양급여(행위 및 약제)는 의학적 타당성·유효성·비용 효과성 등을 토대로 급여 가능한 횟수·간격\*이 고시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나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과거 급여 인정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급여적용 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\* (예시) 헤모글로빈A1C 검사: 연 6회 / denosumab 주사제: 6개월 간격 연 2회

○ 이러한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,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에 급여 인정횟수 또는 간격이 정해진 행위(검사)의 수진자별 인정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「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」를 2022년 12월 26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동 서비스는 그간 행위(검사)에 한해 급여 인정이력을 제공하였으나, 수진자의 타병원 투약이력 확인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중복 처방 등을 우려하는 요양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2024년 8월 30일부터 정보제공 항목을 약제\*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행위 (9항목)	
① HbA1C 검사	⑥ 유방액외부 초음파 검사
② 골밀도 검사	⑦ 상복부 초음파 검사
③ 당화알부민 검사	⑧ 하복부 초음파 검사
④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	⑨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
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	

[24년 신규] 약제 (3항목)
① Denosumab 주사제 (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
+ ② Sodium hyaluronate 20mg (히루안플러스주 등)
③ Sodium hyaluronate 25mg (하이알주 등)

※ 조회결과는 심사 결정된 인정횟수로 청구 전, 심사 중, 심사조정 등인 경우 불포함

○ 동 서비스의 정보제공 항목은 요양기관 요청 등을 반영하여 지속 확대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요양기관에서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보장 위해 「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」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